

제 25 장

최종규정

제 25.1 조

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25.2 조

발효

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교환한 다음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제 25.3 조

개정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.
2. 개정은 양 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교환한 다음 날부터 45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3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이 협정에서 법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은 그것의 개정 및 대체도 포함한다.

제 25.4 조
종료

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. 그러한 종료는 통지한 다음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관세양허는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.

제 25.5 조
정본

이 협정의 영어본, 스페인어본 및 한국어본은 동등하게 유효하고 정본이다.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1년 3월 21일 서울에서 스페인어, 한국어 및 영어로 각 원본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

페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